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1996. 2. 8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2. 2
- 나. 제출자 : 서산시장
- 다. 회부일자 : 1996. 2. 5
- 라. 상정일자 : 1996. 2. 8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호)

가. 제안이유

- 조직의 안정성·능률성·탄력성을 도모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의 추진 및 업무의 균형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구·정원의 재조정에 따라 서산시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를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총정원(국가직 포함) 1,019명중 16명 감원하여 1,003명으로 조정
- 증전 본청에 412명, 의회사무국에 16명, 직속기관에 126명, 사업소에 59명, 출장소에 9명, 읍·면·동에 347명을두고 운영하던 것을, 본청2명(국가직포함7명) 직속기관 14명등 16명을 감원하고, 새로이 해미읍청 관리사무소가 신설되는 사업소에 5명을 증원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는 본청에 410명, 의회사무국에 16명 직속기관에 112명, 사업소에 64명, 출장소에 9명, 읍·면·동에 347명을 각각 두고 운영하도록 함.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 정책개발 담당관의 신설과 청소과의 폐지, 대산출장소의 기구 및 정원감축, 해미읍성관리사무소의 설치등에 따라 인력의 적절한 배치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것으로 개정하여도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생략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62 호
의결년월일	1996. . . (제 호)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

제 출 가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2.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62
--------	--------	----

제출년월일 : 1996. .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 안 이 유

- 조직의 안정성·능률성·탄력성을 도모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의 추진 및 업무의 균형유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구·정원의 재조정에 따라 서산시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를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총정원(국가직 포함) 1,019명중 16명 감원하여 1,003명으로 조정

나. 종전 본청에 412명, 의회사무국에 16명, 직속기관에 126명, 사업소에 59명, 출장소에 9명, 읍·면·동에 347명을 두고 운영하던 것을, 본청2명(국가직 포함 7명), 직속기관 14명등 16명을 감원하고, 새로이 해미읍성 관리사무소가 신설되는 사업소에 5명을 증원조치 하는 한편, 앞으로는 본청에 410명, 의회사무국에 16명, 직속기관에 112명, 사업소에 64명, 출장소에 9명, 읍·면·동에 347명을 각각 두고 운영하도록함 (안 제 2조)

3. 참 고 사 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412명”을 “410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3호중 “126명”을 “112명”으로 하며, 같은조 제4호중 “59명”을 “64명”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이 조례에 의하여 대산출장소에 두는 정원 9명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산시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시 본 청 : <u>412 명</u></p> <p>2. (생 략)</p> <p>3. 직속기관 : <u>126 명</u></p> <p>4. 사 업 소 : <u>59 명</u></p> <p>5.~ 6.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p> <p>.</p> <p>.</p> <p>1. 시 본 청 : <u>410 명</u></p> <p>2. (현행과 같음)</p> <p>3. 직속기관 : <u>112 명</u></p> <p>4. 사 업 소 : <u>64 명</u></p> <p>5.~ 6. (현행과 같음)</p>